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456호

시행일자 2019. 9. 30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(집행정지 연장안내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(보건복지부 2019-86호)

1. 관련근거 :

- 가.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(고시 제2019-86호, 2019.4.30.)
- 나.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19.5.30.)
- 다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495(2019.9.27.)

2. 보건복지부에서 2019.4.30. 고시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6호) [별표1]의 별지3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’ 중 불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약사명	대상 품목	효력정지일
(주)한국팜비오	수클리어액 (354mL)	- (기존) 2019. 9. 30.까지
		- (변경) 2019. 10. 31. 까지

붙임: 대상품목. 끝.

대한의사협회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